

1. 개정이유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식 정비

(안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신청인을 성명(단체명)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행자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험 방법	
반출예정 연월일		반입예정 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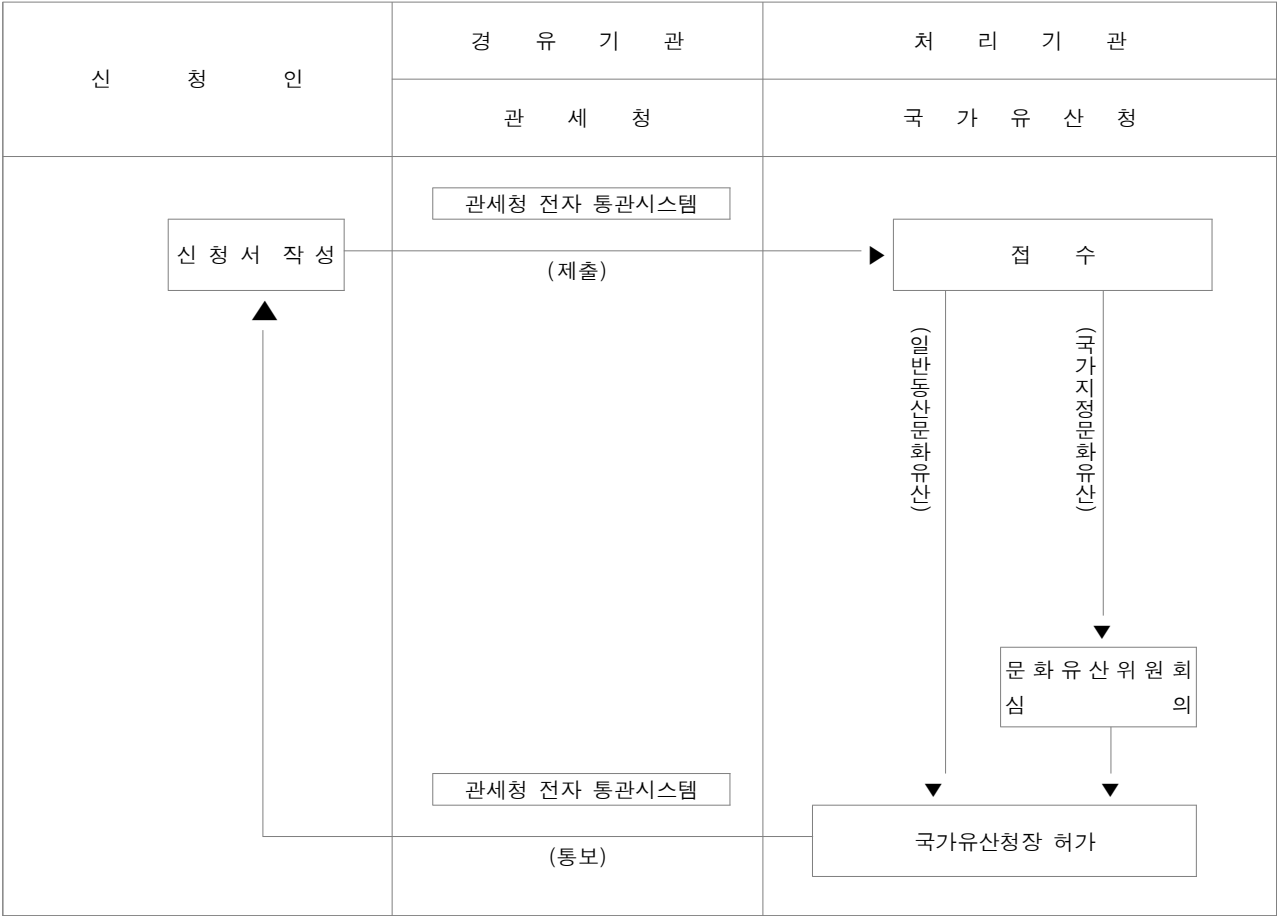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행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장사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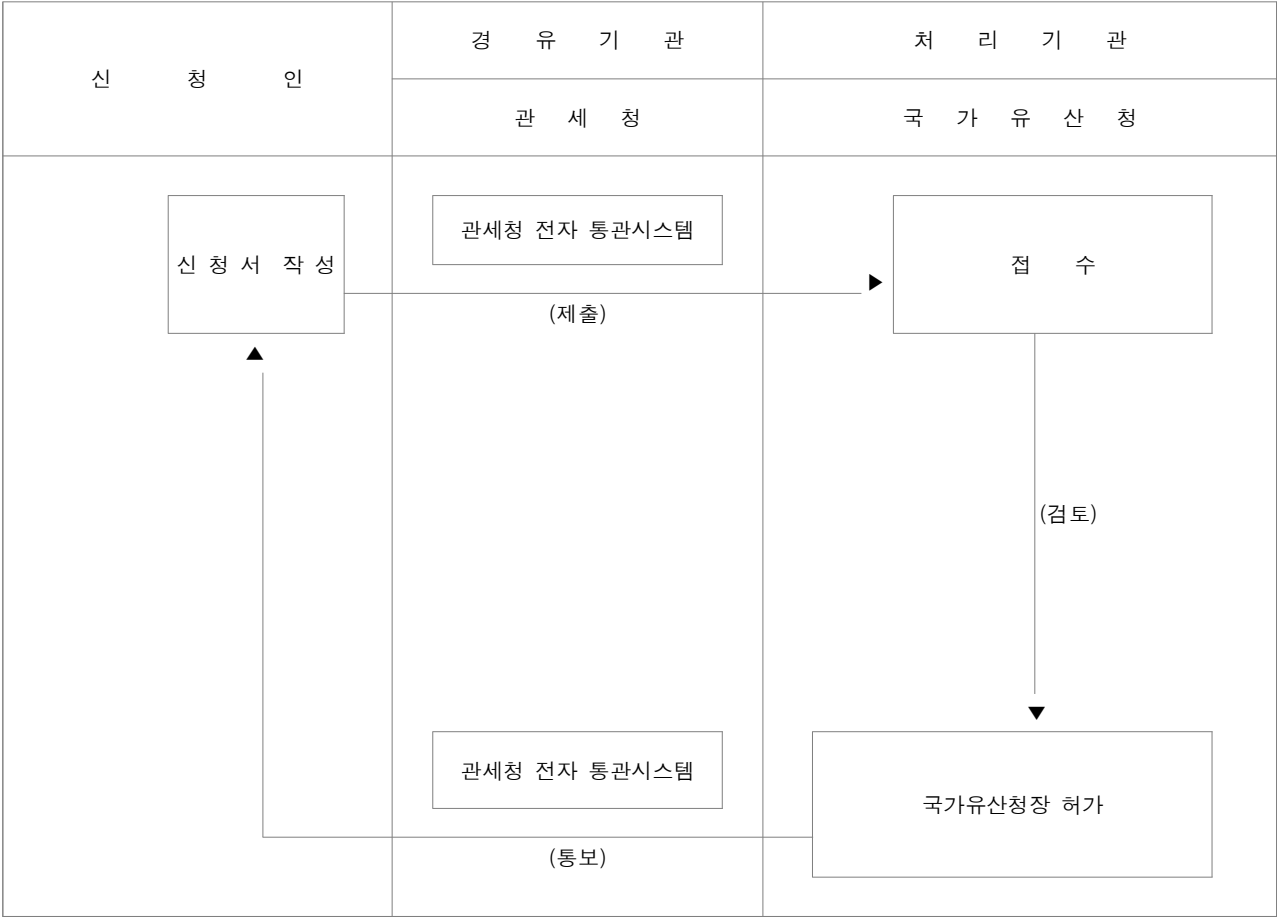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명	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비	고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성명(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 량	취득경위
규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목적			
반출국가			
보험방법			
반출예정 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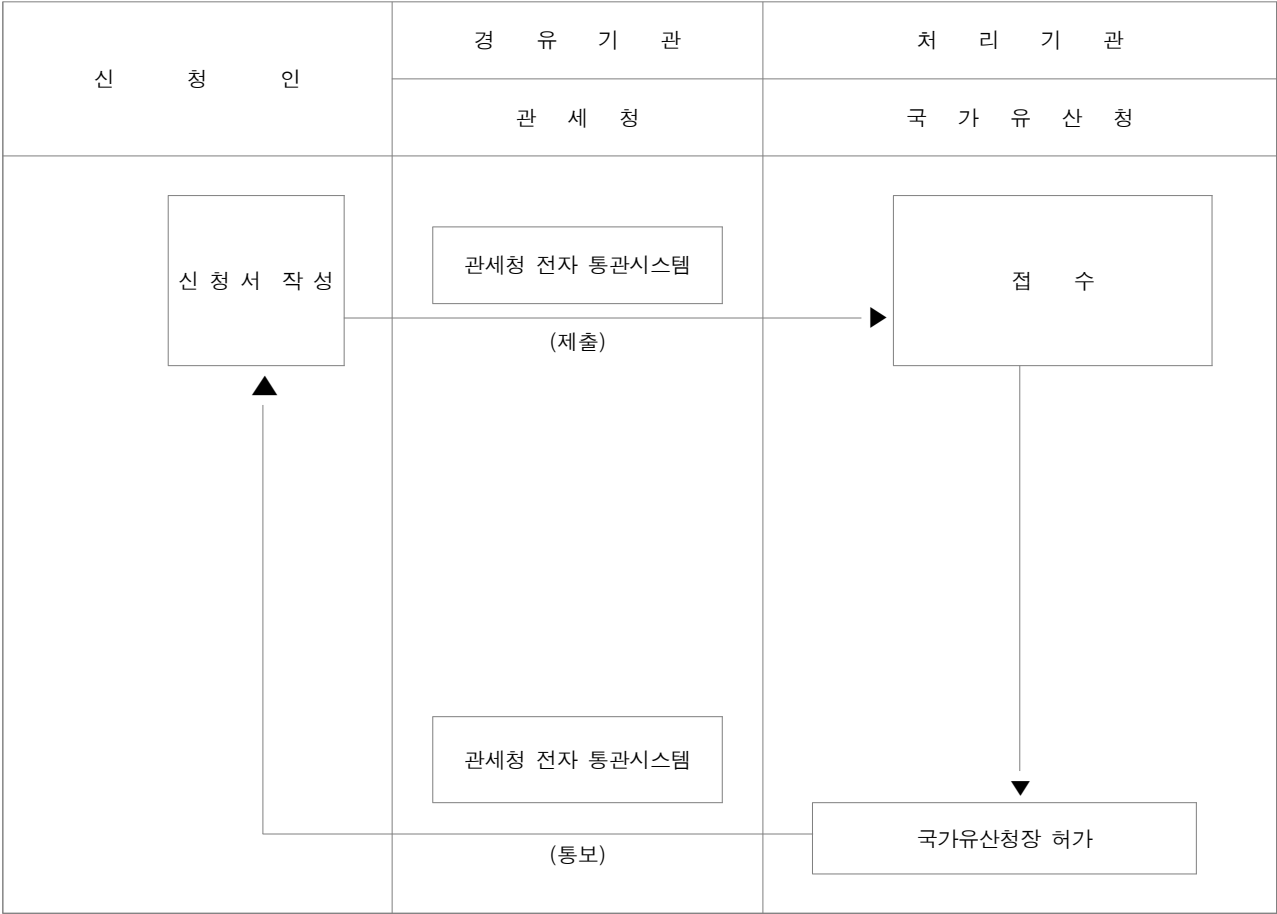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3. 보험증서 사본 4.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단체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 연월일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